



일리노이 주 대법원

통역사 윤리강령

2014년 10월 1일 발효

Korean

일리노이 주 법원 제도의 통역사 윤리강령

서문

법원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언어 또는 청각 장애로 인해 소송 절차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벽을 최대한 제거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언어 장벽이 없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의 행정관인 통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법원 절차와 법원 지원 서비스가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통역사는 사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입니다.

목적

이 윤리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어 비능숙자에 대한 모든 법원 및 법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
2. 법원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형사 피고인 법정 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
3. 형사 및 민사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영어 비능숙자에게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
4. 영어 비능숙자가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
5. 법정 통역사가 참여하는 절차의 효율성, 품질, 균일성 향상
6. 법정 내에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 및 등록 언어 통역사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

범위

1. 이 윤리강령은 사법 제도에 대해 구두 외국어 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관리, 감독, 사용 또는 제공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이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법정 통역사(공인, 등록, 비등록 통역사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 (a) 이 주의 법원 절차에 참여
 - (b) 법원에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정에 대해 통역을 제공
 - (c) 법원이 명령하거나 법원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다른 모든 활동(전문법원, 자녀 양육권 조정 및 강제 중재 절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3.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통역사가 소송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의 차후 지명이 거부되거나, 일리노이 주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통역사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또는 통역사가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공인 또는 등록된 경우,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설

"할 것이다(shall)"라는 용어는 고딕체로 표시된 원칙에 사용됩니다. 해설의 서술에서는 "해야 한다(shoul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및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해설은 이 강령의 입안자가 가능하고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제공됩니다. 법원 정책이나 일상적인 관행이 이 강령의 해설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를 검토하여 법정 통역사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나 관행을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의

이 윤리강령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공인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인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문화적 능숙도"란 서로 다른 문화적 요인을 인식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대, 태도, 가치, 역할, 제도, 언어적 차이 및 유사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통역"이란 구두 언어나 메시지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즉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역사"란 영어와 다른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한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구두로 다른 언어로 전환하면서도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역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비능숙자"란 영어 이외의 한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사 또는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록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수화 통역사"란 어떤 소송 또는 법원 기능의 일부로 수화 또는 다른 손동작이나 구어에 대한 구두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 전문가와 청각 장애, 난청 또는 시청각 장애가 있는 당사자, 증인, 배심원 또는 참관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수화 통역사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주 전체 등록부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일리노이주 청각 장애 및 난청 위원회(Illinois Deaf and Hard of Hearing Commission)로부터 "마스터" 수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추가 교육 및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천 언어"란 진술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고, 통역사는 이 언어를 제2의 언어로 통역합니다. 이 용어는 항상 상대적이고, 진술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하다"라는 용어는 진술자의 주요점 또는 생각을 요약하는 것(예를 들면, 요약 통역, 진술자가 말한 내용의 의미를 설명)을 의미합니다.

"대상 언어"란 통역사가 원천 언어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는 듣는 사람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항상 상대적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역"이란 한 언어로 쓴 글을 다른 언어로 쓴 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등록 통역사"란 일리노이주 법원 행정처가 제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어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강령 1: 정확성과 완전성

통역사는 진술 또는 작성한 내용의 의미에 대해 어떤 사항도 변경하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추가하지 않고, 설명이 필요 없는 정확하고 완전한 통역 또는 즉석 번역을 제공합니다.

해설

통역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중 의무가 있습니다.

1. 영어 비능숙자가 한 말을 소송 절차에 영어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장, 그리고

2. 의사소통 목적으로, 영어 비능숙자에게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과 동등한 언어 수준을 제공

이것은 대상 언어로 의사소통을 제공할 때, 원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포함된 정보의 모든 요소를 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법정 통역사는 증인 또는 진술자의 응답을 정확하게 통역해야 하므로(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응답이더라도), 무응답을 법정과 변호사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통역사는 최상의 기술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법정에서 한 말의 의미(언어의 표현법 또는 사용역 포함)를 충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축어적" 또는 직역 구두 통역은 원천 언어로 한 말의 의미를 왜곡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나, 모든 구두 진술은 무응답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장황하거나, 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통역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역에는 명백한 허위 진술도 포함됩니다.

법정 통역사는 법정이 소송 절차를 요약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면, 법대 협의, 배심원 선정, 배심원에 대한 설명).

통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끼어들거나 본인의 말을 덧붙여서는 안됩니다. 통역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대상 언어에 직접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없는 용어나 구절, 또는 통역사만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오해), 통역사는 법정의 허락을 받은 후에 설명해야 합니다. 구어 통역사는 진술자의 감정 또는 과장된 몸짓을 재연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진술자의 감정적인 강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화 통역사는 손동작에 추가하여 통역하는 언어에 필요한 모든 시각적 단서(얼굴 표정과 몸짓 언어 포함)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정 참여자들이 이러한 통역되는 언어의 필수 요소들을 통역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혼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통역사의 행동에 대한 모든 이의는 판사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증언하는 증인이 때때로 몇 단어의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법정 통역사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러한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녹음된 소송 절차를 듣는 사람이 통역사의 음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완전한 영어로 답변하더라도, 통역사는 증인에게 그의 모국어로 답변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에, 통역사는 당사자들이 영어로 답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뒤로 물러서서 법정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법정 통역사는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진술한 모든 내용을 통역하고, 증인에게 손짓을 하여 법정이 그 이의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진술하지 말라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통역사가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역사가 발견한 통역상의 모든 오류를 정정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통역사는 통역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문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역할 윤리적 책임에는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준비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통역사는 법적 절차의 성격과 목적을 숙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와 다른 정보들을 입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증거 또는 문서에 고도로 전문화된 용어와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령 2: 자격의 제시

통역사는 인증, 교육 및 관련 경험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해설

통역사가 소송에 대한 통역을 수락하면 법적 환경에서 언어적 능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 통역사가 그 소송에 대한 통역을 취소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법원 절차가 중단되고 부족한 공공 자원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지명하기 전에, 통역사가 교육, 인증 및 경험에 대한 완전하고 정직한 설명을 제공하여, 법원의 행정관들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령 3: 공정성과 이해의 충돌 회피

통역사는 공정하고 편견이 없어야 하고, 편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통역사는 실제이거나 인지된 이해의 충돌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설

통역사는 법원의 행정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사의 의무는 법원과 법원이 법률 지원을 하는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역사는 정부의 비용으로 공적으로 고용되거나, 또는 당사자들 중 하나의 비용으로 사적으로 고용되는 것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 통역사는 어떤 당사자들에 대해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나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의뢰인과 업무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소송 절차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통역사는 영어 비능숙자가 통역사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등록 통역사는 공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증인, 배심원,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친척 또는 친구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비공식적인 출석 전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문화적으로 적절한 소개

2. 의사소통의 종류, 방식 또는 수준에 대한 결정
3. 잠재적 이해의 충돌에 대한 결정, 그리고
4. 통역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

통역사는 업무상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태도, 편견, 감정 또는 의견에 대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항상 피해야 합니다.

통역사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은 이해의 충돌로 간주되고, 반드시 판사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이해의 충돌을 공개할 때, 필요한 정보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잠재적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1. 통역사가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친구, 동료, 증인 또는 친척입니다.
2. 통역사 또는 통역사의 친구, 동료 또는 친척이 계쟁 중에 있는 주제에 대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에 대해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소송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3. 통역사가 계쟁 중인 소송에 참여하는 어떤 당사자를 조사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4. 통역사가 이전에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적이 있어 계쟁 중인 형사 소송에 대한 준비를 도와줍니다.
5. 통역사가 계쟁 중인 소송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선정에 개입했습니다.
6. 통역사가 계쟁 중인 소송의 변호사입니다.
7. 통역사가 이전에 당사자들 중 하나에 의해 사적으로 고용된 적이 있어 계쟁 중인 소송에서 통역했습니다. 또는
8. 어떤 다른 이유로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역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태롭게 합니다.

위에 언급된 상황들 중 어떤 하나가 적용되더라도, 통역사가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있는 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거나 인지된 이해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모든 당사자들이 그 통역사를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의 충돌이 있는 경우, 통역사는 판사와 어떤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 비능숙자가 통역사가 편견이 있거나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 통역사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판사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강령 4: 직업적 행동

통역사는 법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해설

통역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 규칙 및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할 때는 법정 전체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음량으로 말해야 합니다. 통역사가 바쁘게 통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통역사가 부적절하게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통역사는 소송 절차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보이지 않게 막는 것을 피해야 하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시각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통역사는 손동작, 얼굴 표정, 몸 전체의 움직임이 통역 대상자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법원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는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행동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통역사는 법원 구내에서, 또는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어떤 당사자에게 비즈니스를 요청하거나, 법률, 의료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강령 5: 비밀 유지

통역사는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특권이 제공된 비밀 정보 및 다른 비밀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해설

통역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입수한 모든 특권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및 유지해야 합니다. 통역사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모든 의사소통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다른 종류의 비밀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통역사는 고용 과정에서 입수한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 또는 공개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통역사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사람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즉시 재판장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통역사는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법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강령 6: 공개 의견의 제한

통역사는 이전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논의, 발표 또는 제공해서는 안되나(의견에 포함된 정보가 특권이 없거나 법률에 의해 비밀 유지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통역사의 공식 직무를 벗어나서, 통역사 업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소송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통역사는 교육 훈련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공유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특권 또는 비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강령 7: 업무의 범위

통역사는 본인의 업무를 통역 또는 번역으로 국한시켜야 하고, 통역 대상자인 개인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또는 통역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통역 또는 번역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해설

통역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제공할 책임만이 있기 때문에, 강령 3의 해설에서 설명한 공식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통역 또는 번역으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역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소통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예에는 단어 또는 생각을 이해 또는 표현할 수 없을 때 법정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진술자에게 의사소통의 속도를 늦추거나 어떤 구절을 반복 또는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통역 오류를 정정하거나, 또는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법정에 알려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역사가 본인과 관련된 진술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통역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동안에만 법률 상담의 내용을 통역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양식, 서비스의 목적 또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달리 상담자나 조연자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공식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 통역을 하는 경우는 제외). 통역사는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에 대해 그 양식에 기재된 언어를 번역할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 양식 또는 양식을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해서는 안됩니다.

통역사는 통역을 제공하는 동안 다른 법원 공무원들(법원 서기, 재판 전 석방 조사관 또는 면접관, 또는 보호관찰 상담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에게 책임이 있는 공무상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강령 8: 통역 수행에 대한 장애물을 평가 및 보고

통역사는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통역사가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법 공무원에게 그러한 의구심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해설

통역사가 영어 비능숙자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언어의 종류를 쉽게 통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법 공무원에게 그러한 의구심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공무원에는 감독 통역사, 판사, 또는 통역사에 대한 문제를 관할하는 다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법정 통역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구절 또는 개념이 있는 경우, 그 통역사는 그러한 상황을 법정에 알려야 하고, 법정은 해당 진술에 대한 설명, 반복 또는 구절의 변경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는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통역사가 영어 비능숙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구절 또는 개념을 법정 또는 변호사가 사용하는 경우, 특히 어떤 개념이 영어 비능숙자의 언어에 문화적으로 동등한 개념이 없을 때, 또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통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통역사는 그러한 상황을 법정에 알려야 합니다.

통역사는 통역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환경적 또는 물리적 제약에 대해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법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예를 들면, 법정이 통역사나 영어 비능숙자의 말이 서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정숙하지 않거나,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말하거나, 또는 통역사가 적절히 통역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말하는 경우). 수화 통역사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전범위의 시각 언어 요소(얼굴 표정, 몸 전체의 움직임, 손동작 포함)를 보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정신적 및 신체적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필요한 경우 팀 통역을 사용할 것을 추천 및 권장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가능한 경우 업무를 수락하기 전에 소송의 성격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통역사가 직업상의 자격, 기술 및 경험을 잠재적 업무에 더 가깝게 맞출 수 있고, 그러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통역사라도 갑자기 친숙하지 않은 기술적 또는 전문적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예정되지 않은 전문가 증인의 증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통역사는 그러한 주제에 익숙해지기 위해 짧은 휴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어에 친숙해지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역사는 판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그 소송의 언어 및 주제가 그의 기술과 능력을 초과할 것 같은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통역을 수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역사는 용어에 대한 친숙성, 준비, 또는 증인이나 피고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역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정 통역사가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그 통역사는 계속 증인석에 있더라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먼저 통역사라는 것을 밝힌 후에 즉시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증언이 완료된 후에 오류가 인지되는 경우, 법정 통역사는 판사와 변호사에게 판사석 또는 법대 협의를 요청하고, 문제를 설명하고, 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법정 통역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지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람은 증인석에서 증언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법정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심 재판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오류에 대한 주장은 배심원단에게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법정에 제기할 수 있도록 법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때, 법정은 통역이 부정확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문제가 오류를 정정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한지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법정이 오류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법정은 무엇이 정확한 통역인지에 대해 양측 변호사가 제출한 정보, 법정 통역사, 그리고 판사가 선정한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해야 합니다. 판사는 정확한 통역에 대한 증언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원래의 통역과 다른 경우, 법정은 그 결정에 따라 기록을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에게 알려줍니다.

강령 9: 윤리 위반을 보고할 의무

통역사는 법률, 이 윤리강령의 조항 또는 법정 통역과 번역에 적용되는 다른 공식적인 정책의 준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법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설

통역 서비스 사용자는 보통 통역사의 적절한 역할을 오해하기 때문에, 통역사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 윤리강령 또는 다른 법률, 규칙, 규정의 조항, 또는 법정 통역에 적용되는 정책의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 또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의무를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통역사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알고 있는 사용자가 통역사가 의무를 위반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통역사는 감독 통역사, 판사, 또는 통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알려주어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강령 10: 전문 능력 개발

통역사는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같은 활동은 물론, 관련 분야의 동료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전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해설

통역사는 통역 기술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능숙도와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기술 용어, 사회적, 지역적 방언의 과거 및 현재의 경향, 그리고 법정 절차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 포함).

통역사는 전문적 직무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법원 규칙, 사법 정책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워크숍, 전문가 회의, 동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통역 분야에 대한 최신 문헌을 읽는 것을 통해서 전문직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문의할 연락처: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Illinois Courts
Civil Justice Division
Language Access Services Specialist, Sophia Akbar
222 N. LaSalle Street, 13th Floor
Chicago, IL 60601
전화 (312) 793-2013
팩스 (312) 793-1335
이메일: sakbar@illinoiscourts.gov